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6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의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자에서 가맹사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의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9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개"를 "50개"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5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6호"를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6호의2"를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7호"를 "법 제29조제1항제5

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8호"를 "법 제2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9호"를 "법 제29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